

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사업개요

1. 추진 개요

□ 추진 근거
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- 「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」(안)

□ 사업개요

- 기 간: 2026년 1월 ~ 12월
- 대 상: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
- 지원내용: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지원
- 접수방법: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지급방법: 현금 지급
- 소요예산: 273,000천원(사업비 266,000천원, 운영비 7,000천원)

2. 세부 추진계획

□ 지원대상

-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 - 1)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는 사람
 - 2) 저소득층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
 - ※ 간병비 지원은 1), 2) 기준 동시에 충족한 기간만 가능
 - 3) 4대 중증질환자(암환자, 뇌혈관질환자, 심장질환자, 희귀질환자)이면서 보건복지부 고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의 산정특례 대상자
 - 4)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사람

-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병원, 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(요양병원 제외)

□ 지원내용

- 지원 금액: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간병비 지원
(2026. 1. 1.부터 발생한 간병비에 한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)
- 지급 방법: 현금 지급
 -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(※ 압류방지 전용 통장 불가)
 -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대리수령 가능
 - 대리수령 대상: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
 - 본인 및 대리수령이 어려울 경우 간병업체 계좌로 지급 가능
- 지급 기한: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

□ 지원제외 및 차액 지급 대상

- 다른 법령·조례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
 - 「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」 지원을 받은 경우
 - 「성남시 1인 가구 간병비」 지원을 받은 경우
 - 그 밖에 사업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은 경우
-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받은 경우
- 간병업체(개인사업자 포함)를 통한 간병이 아닌 개인 간 간병을 받은 경우
- 요양병원 이용 환자
-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이용 환자

□ 지급신청

- 신청자
 - 지원 대상자(본인), 위임받은 대리인,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
- 신청방법: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 - (방 문)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, 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
 - (온라인) 성남시청 홈페이지(seongnam.go.kr)

※ 대리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

□ 지급 절차

신청 접수	·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- (방 문)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, 시 공공의료정책관실 - (온라인) 성남시청 홈페이지(seongnam.go.kr) · 대상자 확인 - 행복이음 원스크린 조회를 통해 주소지, 복지대상자 여부 확인	행정복지센터 시청 홈페이지
신청서류 이송	· 신청 서류 확인 -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통장사본, 입·퇴원 확인서, 질병증빙서류, 간병사실확인서, 영수증 등 · 신청 서류 시청으로 이송	행정복지센터
지급대상 여부 검토	· 신청 서류 심사 - 이송 서류 2차 심사 · 지급 제외 또는 차액 지급 대상자 확인 -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, 1인 가구 간병비 등 지급 제외 대상 여부 확인	시청 (공공의료정책관실)
간병비 지급	· 지급 기한: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- 매월 1~15일 신청 → 당월 말일 지급 - 매월 16~말일 신청 → 익월 15일 지급	시청 (공공의료정책관실)
지급 결과 통보	· 지급 결과 통보	시청 (공공의료정책관실)

□ 환수조치

-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
- 허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